■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5.>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이체희망일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해당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해당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계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 신청서(해당 공단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 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 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 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아이디도 같이 적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가입대상자 수" 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3. "근로자 수" 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 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3. "회계종목" 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 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사업장의 "관리번호" 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됩니다). 1. "사내하도급" 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 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 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